

경운대학교 교수회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칙 제8장에 의한 경운대학교 교수회의 조직, 운영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이회는 경운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에 재직중인 조교수 이상의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본회에 대의기구로서 평의원회를 둔다.

제3조(임원의 구성 및 선임) ① 본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의 임원을 둔다.

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그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임원의 역할) ① 의장은 본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의장 궐위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며,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부의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.

③ 보궐선거로 선출되거나 승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2장 전체교수회

제6조(총회의 소집)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초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임시총회는 총장, 의장 또는 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제7조(총회의 성립 및 의결) ①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전체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실제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위임장은 전체회원의 4분의 1이내만 인정한다. 전체회원이란 재적회원 중 파견, 휴직, 출장, 휴가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.

② 평의원회의 의결이 있거나, 총회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면표결(인터넷을 이용한 표결도 서면표결의 한 형태로 본다. 이하 같다.)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.

③ 서면표결의 경우에는 전체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총장해임권고안 및 교수회의장 불신임을 의제로 한 총회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(위임장

은 포함하지 않음)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
 되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제8조(총회의 기능)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본 회의 의장, 부의장 선출 및 의장의 불신임
2. 본 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
3. 기타 총장, 의장 및 평의원회가 부의한 사항

제9조(총장해임권고) ① 총장해임권고 안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 전체교수회 총회의
 의결을 거쳐 법인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
2.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때
3. 총장으로서의 직무상의 권한을 오·남용함으로써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서 심히 벗어났
 을 때

② 총장해임권고안은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전체교수회 총회에 출석하여 무기
 명 비밀투표를 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의 해임권고안은 전체교수회 총회 소집 공고시 상정안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장불신임) ① 의장불신임 안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 전체교수회 총회에서
 의결한다.

1.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
2. 교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때
3. 의장으로서의 직무상의 권한을 오·남용함으로써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서 심히 벗어났
 을 때

② 의장불신임안은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전체교수회 총회에 출석하여 무기
 명 비밀투표를 하여야 한다.

③ 의장불신임안은 전체교수회 총회 소집 공고 시 상정안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제3장 기 타

제11조(기타) ①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
 있다.

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